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경 과

가. 발 의 자 : 장흥순 의원 (찬성자 10명)

나. 의안번호 : 제 2330 호

다. 발의일자 : 2018. 1. 30.

라. 회부일자 : 2018. 2. 6.

## 2. 제안이유

증가하는 재난 취약계층과 쪽방촌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재해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재난예방사업은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또한, 재난 취약지역의 생활안전개선사업의 자치구 예산지원 수요 증가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재난취약가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론을 반영하여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49조제2항).

나. 재난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56조제3항).

다.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7조제3항 신설).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에너지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원안 참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된 서울시 재난예방사업에 대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재난취약가구<sup>1)</sup>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일례로, 일반가정에 설치된 보일러 연통의 배기가스 누출에 따른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위험, 전기선이나 콘센트 등의 노후화에 따른 화재발생 위험, 장마철 침수위험 등 일반가정의 생활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들이 있으나,
-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은 이를 조치할 형편이 되지 못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들에게 시장으로 하여금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등 일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표]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제3항	<신설>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가능

-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이미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재난취약가구의 생활 기초시설(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등)을 점검 및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정비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도모하고자 매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표] 참조).

[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획가구수		16,000	17,000	18,000	19,000	18,418	17,593	22,277
정비가구수		16,846	18,843	20,513	20,889	24,560	22,201	24,156
총예산투자액		532,207	812,059	809,150	900,485	1,003,696	1,022,172	1,037,396
예산 투자	국비	153,745	109,075	0	0	0	0	0
	시비	153,745	485,925	595,000	595,000	595,000	595,000	595,000
	구비	224,717	217,059	215,000	305,485	408,696	427,172	442,396

[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성과(2017년도)

구분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등
정비가구수	9,985	7,695	5,236	1,249
정비내역	누전차단기, 전등, 콘센트 등	가스타이머, 밸브, 가스배관 등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화기 등	보일러 정비, 연통, 밸브 등

[표] 재난취약가구 유형별 현황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 노인	장애인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쪽방촌	저소득	화재 취약
가구수	12,357	4,873	725	3,213	210	150	1,093	1,544

○ 그러나 동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2)에 따라

- 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 선언적 포괄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보다 구체화된 세부지침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의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등의 생활환경에 대한 안전 점검이나 정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구체적 시행지침을 준다는 측면에서 동감할만하다 하겠음.
- 다만, 개정안 제57조제3항 중 “생활환경”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지원범위 선정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개정안이 거주시설의 재난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동 조례 역시 재난안전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안전환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 더불어, 안 제49조제2항의 중앙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사항(국민안전처장관→행정안전부장관)은 현행 조례에 기 반영(개정 2018.1.4.)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 안 제56조제3항에 추가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안 제57조제3항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에 해당하여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